

## 안양시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0. 3. 17 훈령 제381호  
일부개정 2015. 12. 18 훈령 제643호(안양시 훈령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정)  
일부개정 2020. 1. 31 훈령 제706호(안양시 훈령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일괄  
정비 규정, 제명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 행정구역안의 가로·보안등과 그 부대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이라 함은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에 시설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하며 터널등, 교량등, 육교등, 지상경사로등, 지하차·보도등이 포함된다. 다만 공원 등은 제외한다.
2. “보안등”이라 함은 주택가, 상가, 공장, 산책로 등이 형성된 지역의 야간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방법용으로 이용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터널등”이라 함은 터널내에 시설하는 조명 등을 말한다.
4. “교량” “육교” “지상경사로등”이라 함은 교량, 육교, 지상경사로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시설물을 밝게 할 목적으로 시설된 조명 등을 말한다.
5. “지하보·차로등”이라 함은 지하차도, 지하보도겸차도, 지하보도에 시설하는 조명 등을 말한다.
6. “공원등”이라 함은 도시근린공원, 미관광장등에 있는 공원조명시설을 말한다.
7. “유지”라 함은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복해서 시행하는 일상적인 작업을 말한다.
8. “보수”라 함은 유지로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게 손상된 시설물을 수리하여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기존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 정비를 하고 손상된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여 당초 설치된 상태로 보전함을 말한다.
10. “가로·보안등의 부대시설”이하 함은 가로·보안등이 그 본래의 기능을

갖도록 지원해주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구역 및 사무범위) 이 규정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에 설치되어 있거나 새로이 설치하는 모든 가로·보안등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설치 및 관리에 따른 관할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 가. 가로·보안등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조정 및 운영지도
- 나.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가로·보안등 위탁관리 업무의 지도 및 감독
- 다. 12미터 이상의 도로개설 및 교량신설 또는 개량공사로 인한 가로등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구·동

- 가. 가로·보안등의 고장접수
- 나. 12미터 이하의 도로개설 및 교량개량공사로 인한 가로등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가로·보안등 위탁관리에 따른 작업지시 및 감독
- 라. 기타 가로·보안등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3.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 가. 시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서”에 의하여 안양시 행정구역안에 설치된 모든 가로·보안등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유직관리
- 나. 시 및 구·동에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와 관련한 요청사항
- 다. 가로등 개체
- 라. 보안등의 신설 및 개체

제4조(설치 및 유지관리비용부담구분) 가로·보안등의 시설 또는 개체 및 유지관리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보안등의 설치(신설 및 개체)

- 가. 12미터 이상의 도로개설, 확·포장, 교량신설 및 개량 등으로 인한 가로등의 신설 및 개체공사와 그 부대시설 설치는 시에서 시행한다.
- 나. 12미터 미만의 도로개설 및 교량개량 공사로 인한 가로등의 신설 및 개체되어야 할 시설물은 공단에서 시행한다.

2. 가로·보안등의 유지관리

가. 가로·보안등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는 공단에서 실시하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나. 유지관리비용의 부담방법은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

3. 가로·보안등 및 그 부대시설의 개체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업개요(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기간 등)

나. 사업배경(사업의 필요성, 조명실태, 기타)

다. 사업효과(교통안전성, 환경조화 및 개선성, 기타)

라. 기타 참고사항

제5조(관리이관절차) ① 시 소속기관(이하 위탁을 받아 집행하는 공단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가로·보안등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이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시설물 시공부서에서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준공도면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설물 관리부서에 관리이관을 요청한다.

2. 관리이관을 요청받은 관리부서는 준공도면과의 일치여부를 검사한 후 인수한다.

3. 관리부서에서는 관리이관 받은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도면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통보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부서에서는 설치실적을 매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공부서에서는 공사시행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장 가로등의 설치

제6조(설치계획검토) 가로등의 설치는 도로의 종류, 기능, 구조, 이용자, 및 통행량, 속도, 주변환경, 기상조건, 전원공급상황, 주변토지 이용, 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등을 검토한 후 노면의 휘도 및 균제도, 눈부심, 유도성등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양호한 환경 내지 주변과 조화유지는 물론 경제적인 조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조도의 기준) ① 가로등 설치시 도로의 조명기준은 다음 표에 기재한 수치 이상으로 한다.

도로의 구분	평균노면휘도 (nt)	종합균제도 (최소/평균)	차선축균제도 (최소/최대)	눈부심 조절마트
노폭25미터 이상, 주간선도로	2	0.4	0.5	5
보조간선도로 ·기타	1.5	0.4	0.5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면의 종류별 평균노면휘도 환산계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스팔트노면: 15 (Lux×nt)
2. 콘크리트노면: 10 (Lux×nt)

③ 직선부의 도로에 연결되는 종속된 곡선부, 교량, 교차점 등의 특수한 곳의 조명(국부 조명)은 배치, 배열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 터널 및 지하차도의 조도는 KSA 3703, 횡단보도의 조도는 KSA 3702, 도로, 광장, 공원의 조도는 KSA 3011을 준용한다.

제8조(조명방식) 조명방식은 풀조명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구조와 교통 상황에 따라 하이마스트, 구조물설치, 거티너리조명 방식 등을 사용 또는 병용할 수 있다.

제9조(광원) 광원은 고압나트륨램프, 저압나트륨램프,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 램프중에서 선정하되 종합효율, 수명, 광속유지율, 광원색, 연색성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종류, 목적, 인지조건과 조명기구에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 가로·보안등의 광원은 고압나트륨램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등기구) ① 가로등 설치시 등기구 KSC 7611(도로조명기구) 규정을 준용하는 것 외에 도로의 구분, 외부조건에 의한 배광성과 눈무심 제한조건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세종로 대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택가에 시설하는 등기구는 개인이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조명지구의 배치, 배열) 조명기구의 배치, 배열은 도로노폭, 단면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가로등

가. 조명기구의 설치높이(H), 오우버행(Oh), 경사각도(O)

한등당 광원광속 (1미터)	부착 높이 (미터)	오 우 버 행 (미터)		기구의 경사각도 (도)
		발광부분의 길이가 0.6미터 미만의 기구	발광부분의 길이가 0.6미터 사상의 기구	
12,500 미만	8 이상	1 이하	1.5 이하	5 이하
12,500 이상 30,000 미만	10이상	1 이하	1.5 이하	5 이하
30,300 이상	12이상	1 이하	1.5 이하	5 이하

다만, 중앙분리대에 부착하는 기구 및 가로수에 지장 또는 장애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등구 배열기준

- 1) 편측배열: 차도폭이 등주의 높이와 같거나 좁을 경우
- 2) 지그재그배열: 차도폭이 등주의 높이에 비해 1배와 1.5배 사이일 경우
- 3) 마주보기배열: 차도폭이 등주의 높이보다 1.5배 이상일 경우
- 4) 중앙배열: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시고속도로 등에 Y형으로 설치
- 5) 중앙 및 마주보기배열: 중앙분리대의 Y형과 마주보기 혼합배열
- 6) 곡선부도로에 있어서의 등구배열은 곡선외측에 편측배열로 하며 간격은 다음표와 같이 한다.

등구높이	곡률반경(미터)			
	300 이상	250 이상	200 이상	200 미만
조명기구 (12미터 미만)	35 이하	30 이하	25 이하	20 이하
조명기구 (12미터 이상)	40 이하	35 이하	30 이하	25 이하

- 7) 횡단구배가 큰 경사로의 등기구는 경사노면과 평행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 8) 기타 특수한 장소의 국부조명은 KSA 3701을 준용한다.

다. 등구별 차도폭(W)에 따른 설치높이(H)와 간격(S)

배 광 중 류 높이 및 간격	커트 오프형		세미커트 오프형		논커트 오프형	
	H	S	H	S	H	S
배열						
편 측	1.0W이상	3H이하	1.2W이상	3.5H이하	1.4W이상	4H이하
지 그 재 그	0.7W이상	3H이하	0.8W이상	3.5H이하	0.9W이상	4H이하
양측 및 중앙	0.5W이상	3H이하	0.6W이상	3.5H이하	0.7H이상	4H이하

2. 광장등

가. 광장(교차로등)의 등주설치 높이는 건주장소(원점)에서 본 평균 반경(r)에 30미터를 가산한 길이에 tan 15도를 곱하여 얻은 값  $[H=(r+30) \times 0.268]$  이상으로 한다.

나. 등주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중심부(교통섬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보도, 보행등은 도로의 규모, 이용형태, 기구의 배광, 소요조도, 등주의 입지·조건 등에 따라 가로의 특징을 살려 배치, 배열한다.

4. 교량, 육교 등은 이용목적별 구조나 의장에 조화를 고려하고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여 배치, 배열 한다.

5. 터널, 지하보차도등의 배치, 배열은 KSA 3011을 준용한다.

6. 고원등은 고궁, 공원, 기타 특수지역에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검토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창출할 수 있는 광원, 조명기구, 등주등을 선정하여 임의 배치, 배열한다.

제12조(자재의 품질유지) ① 도로조명용 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품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재의 사용형태, 구조, 성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주

가. 등주는 풍력 및 기타 외력에 대한 충분한 강도를 가진 베이스레이트식 강관 8각 테퍼폴(Taper-Pole) 사각암을 표준으로한 2구용 국기꽃이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공원, 고속화도로 램프구간, 하천변등 특수지역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등주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강관 8각 테퍼폴의 경우 외부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후 용융아연도금하

고 지상 2.5미터까지 침지물부착 방지재료로 마감 처리하여, 색상은 명회색(80740)으로 한다.

다. 가로등주의 국기꽃이 높이는 지상에서 2.5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2. 가로등 점·소등 제어장치 - 점멸기

가. 가로등 점멸기는 일·출몰 박명시간을 계절변화에 관계없이 자동추적제어기능 또는 일,출몰 시간을 미리 정하여 진행하는 연속제어기능을 갖춘 상시 격드검용 자동제어기를 사용한다.

나. 점멸기 외부(배전반) 재질은 스텐레스를 표준으로 하고 강제 인산염 피막처리 후 용융아연도금을 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 점멸기의 설치는 지주자립식을 표준으로 하고, 주변여건이 지주여건이 자주자립식 설치가 곤란한 곳, 통행에 지장이 많은곳 등은 등주 자체에 부착할 수 있다.

3. 관로는 시공성과 사후관리를 감안하여 최소 직경 28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되 파의 굵기(내부단면적)는 케이블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보다 2.5배의 굵기를 선정하여야 하며 노출부분 또는 토목구조물내에는 아연도강관을, 지중매설은 비닐계열의 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로의 구성은 유지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평균부하법에 의한 동일전선 굵기로 하고, 종단 전압강하가 6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며 가공선은 2.6밀리미터 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DV) 및 PE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CV)을, 지중선은 5.5제곱밀리미터×1C 이상의 600V 가교 PE절연 비닐시 스케이블(CV)을, 등주내 배선은 600V 가교 PE절연비닐시스 케이블(CV)3.5제곱밀리미터×2P를 기준으로 한다.

5. 안정기는 역율이 90퍼센트 이상인 것을 사용하고, 취급, 안전, 효율, 절전 등을 감안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제13조(시공기준) ① 등주의 기초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1. 등주의 기초콘크리트와 앙카볼트는 등주의 자체하중이나 풍압하중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다만, 앙카볼트의 최소규격은 L형앙카  $\phi 22 \times 500$  밀리미터 이상의 용융아연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2. 산뜻한 도시미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가로등을 보도상에 설치한 경우 등주의 기초콘크리트상면을 경계석 높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등주내 케이블

을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지중전선관 종단을 기초콘크리트상면보다 3센티미터 정도 높게 하고 기타 설치장소에는 등주의 기초콘크리트상면보다 3센티미터 정도 높게하고, 침하 균열등이 없도록 기초의 하부와 주변되 메움을 실시하여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가로등의 설치는 도로공사와 병행하여야하나, 여건상(시기, 예산 등) 부득이 가로등 병행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교량, 고가차도, 보도정비등 공사시 등주기초 설치와 배관을 하여 추후 토목구조물의 손괴와 재굴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선관로의 매설깊이는 전선관 상단에서 지표면까지 0.6미터(차도 횡단부분의 1.2미터)로 하고 차도부분 이외의 터파기는 600밀리미터×300밀리미터(윗면×아랫면×높이)를 기준으로 하고, 되메우기 전에 관통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수등 지장물이 있거나 가로수 식재가 예상되는 지역은 사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관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굴착시에는 교통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도로 횡단 부분은 굴착 24시간내 복구하여야 하며, 타 시설물(전력선, 통신선가스관, 수도관등) 유무를 사전에 검토후 굴착하여 시공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배선은 주간선에 직접 안정기의 리드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원용 분기선을 구성하여 접속하고, 주간선은 등주 기초대 상부 70센티미터 정도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정기 뚜껑상단에서 20센티미터 여유를 두어야 한다.

⑤ 가로등 및 점멸기 기초대 설치장소마다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등주, 안정기, 점멸기등 철재류의 접지단자에 접속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⑥ 회로의 구성은 전력절감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4선식으로 구성하고 2개 회로로 분류하여 격등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로구성을 하여야 한다.

### 제3장 유지관리

제14조(유지관리의 위탁) ① 모든 가로, 보안등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자는 시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작업지시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가로, 보안등 및 그 부대시설의 위탁관리업체로서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물론 시장의 작업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15조(공단의 유지관리) 공단은 가로·보안등 및 그 부대시설의 위탁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 시설물 점검은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으로 구분하며, 시설물점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은 전체 가로·보안등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1주일 단위로 야간순찰을 실시하여 점소등에 관련된 고장발생 사항을 조사하여 즉시 또는 익일 조치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은 가로·보안등 및 그 부대시설의 구조, 보수내력, 교통량, 계절기상상태 등에 따라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목의 내용에 유의하여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가. 등 주 - 기초와의 고정상태, 경사 및 만곡유무, 도장 및 부실상태, 안정기 뚜껑이탈 유무, 국기꽃이 망실등

나. 등기구 - 등기구의 부착상태, 램프 및 그러브와의 고정상태, 그러브 파손 및 오염

다. 점멸기 - 노후, 누수, 전기, 기계적 안전상태, 점소등 시간

라. 선로의 절연 및 접지사항(누전확인)의 측정

마. 한전선로 및 타시설물과의 상관관계 여부

3.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외에 가로, 보안등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다음 각목의 위험요소가 발생한 때에는 발견 또는 통보 받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하여 보행자가 및 통행차량에 위험을 주는 가로등주

나. 현수막등 광고물이 설치되어 전복의 위험이 있는 가로등주

다.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시

제17조(정비) ① 등기구 내외면이 오염으로 인하여 조도가 현저히 저하될 때

에는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램프 교체시에 등기구 청소를 병행하여야 한다.

② 광원의 교환은 불점등 램프 이외에도 램프가 깜박임 현상이나 보수통계자료가 정립된후(램프, 안정기, 교체후 4년 초과시) 광속이 현저히 감소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안정기와 램프는 특성이 맞지 않아 수명의 단축과 과다전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같은 특성 제품으로 교환하고 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주와 분점함 청소는 내외물이 오염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될 경우에 등주는 물청소를, 분전함은 마른 걸레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로 해결이 안될 경우 도장을 실시하고 이때 표면의 이물질(광고물, 녹등)을 완전히 제거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고주의 교체는 기존의 것과 같은 종류로 교체하여야 하며, 원인자에게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등주 또는 분전함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누후 불량 점멸기는 개체, 수리하여 점소등 시간을 준수하여 특히 주간점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등주와 보안등 점멸기에 부착된 관리번호는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신설 또는 교체시 관리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⑨ 지하차도 터널등 보수(중앙분리대의 가로등 포함)는 연 1회 일괄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급적 지하차도 벽면청소와 병행 실시한다.

제18조(관리대장의 비치) 가로등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노선별 가로등관리카드(별지 제1호서식)
2. 동별 보안등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
3. 노선별 분전함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4. 지하차, 보도등(제어반, 발전기, 배수펌프, 조명등)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
5. 육교 및 지상 경사로등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
6. 순찰, 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
7. 보수작업일지(별지 제7호서식)
8. 민원신고처리부(별지 제8호서식)
9. 사고관계처리부(별지 제9호서식)

제19조(야간 및 공휴일근무) ① 민원신고 및 긴급사항 조치를 위하여 야간 및 공휴일 대기조를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어 긴급사항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야간 및 공휴일 대기조의 근무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하절기(3, 4, 5, 6, 7, 8, 9, 10월)는 21:00까지, 동절기(11, 12, 1, 2월)는 20:00 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장되어 실시설계가 진행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5. 12. 18 훈령 제643호 안양시 훈령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31 훈령 제706호, 안양시 훈령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일괄정비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가 로 등 관 리 카 드

관 리 번 호		노 선 번 호	
관 리 기 관		설 치 일 자	
동 주 규 격		등 기 구 명	
광 원		등 수	
분전함위치			
설 치 장 소			
※ 보 수 이 력			
착 공	준 공	시공업체	보 수 내 역

[별지 제2호서식]

보안등 관리카드

관 리 번 호			
관 리 기 관		보안등 종류	
S / W 종 류		광 원	
설 치 일 자		한 전 계 약 용 량	
배 열 방 법		노 선 명	
시 공 회 사		담 당 연 락 처	
설 치 장 소			
점멸기 위치			
※ 보 수 이 력			
착 공	준 공	시공업체	보 수 내 역

[별지 제3호서식]

가로등 분전함 관리카드

관 리 번 호			
관 리 기 관		분 전 함 종 류	
설 치 일 자		계 량 기 No	
한전고객 No		한 전 계 약 용 량	
회 로 수		Main 차 단 기	
분전함 위치		부 하 차 단 기	
※ 가 로 등 정 보			
점멸기 위치		광 원	
등 주 종 류		총 본 수 ( 등 )	
배 열 방 법		시 공 회 사	
※ 보 수 이 력			
작 공	준 공	시공업체	보 수 내 역

[별지 제4호서식]

지 하 차, 보 도 등 관 리 카 드

관 리 번 호					
관 리 기 관			차, 보도등		
설 치 일 자			계 량 기 No		
한전고객 No			한전계약용량		
※ 발 전 기 정 보					
모 델 명			용 량(kW)		
R. P. M			배어링 규격		
제 조 ( 설 치 ) 회 사 명			S E R I A L		
설 치 일 자			탱 크 용 량		
※ 배 수 펌 프 정 보					
용 량(HP)			설 치 일 자		
양 정(M)			구 경(mm)		
토 출 량			배어링 규격		
※ 조 명 등 정 보					
조 명 등 수				규 격	배 전 반
계	백열등	형광등	나트륨등		
※ 보 수 이 력					
착 공	준 공	시공업체	보 수 내 역		

[별지 제5호서식]

지상경사로등 관리카드

관 리 번 호			
관 리 기 관		분 전 함 종 류	
설 치 일 자		계 량 기 No	
한전고객 No		한 전 계 약 용 량	
회 로 수		Main 차 단 기	
분전함 위치		부 하 차 단 기	
※ 지상경사로등 정보			
광 원		수 량	계
			백 열 등
			형 광 등
			나 트 류 등
등 주 종 류		등 기 구 종 류	
배 열 방 법		시 공 회 사	
※ 보 수 이 력			
착 공	준 공	시공업체	보 수 내 역

[별지 제6호서식]

순찰 점검 일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 재
분	야				
내	용	1. 점검지역: 2. 점    검    차: 3. 점검시간: 4. 점검내용:			
처	리    결    과 및    계    획	1. 처리결과 2. 조치계획			
고	장    합    계	● 총 고장건수: ● 수 리 완 료: ● 미 조 치 건:			

[별지 제7호서식]

보 수 작 업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
					재
분    야	위    치	작    업    내    용			
소    요    자    재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